

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Q 상증세 관련 예규(상속증여-382, 2013.7.22)에 따르면,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.

반대인 경우 즉,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경우, 수혜자가 법인이 아니므로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?

A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귀사의 의견대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,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.

태풍피해 복구비용의 현금흐름 구분

Q 태풍피해로 인한 건물 등 원상복구 및 폐기물처리비용, 관련 경비 등의 비용들에 대해 현금흐름 구분 시 영업현금흐름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.

신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현금흐름으로 구분하는 것이 문제없을 것 같은데, 피해 복구에 따른 원상복구에 사용되는 수선비 성격의 비용들은 단순히 영업현금흐름으로 보면 되나요?

A 수해에 따른 복구비용관련 비용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현금흐름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
매출채권 회수 관련

Q 매출채권 회수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.

'당사 → 당사의 중국현지법인 → 중국 고객사' 이런 흐름이 정상적인 방법이었으나 당사 담당자의 착오로 '당사 → 중국 고객사' 이렇게 제품을 보내고 매출채권을 계상하였으나 중국 고객사는 '중국현지법인이 공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로 대금을 송금해 줄 수 없다' 라고 하여 중국현지법인에서 중국 고객사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

당사로 보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국 현지법인에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금액 회수시 입금처는 당사의 현지법인이고 매출채권 상계는 중국 고객사로 처리를 해도 무방할런지 여부입니다.

A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된 사항은 세법이나 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. 다만 중국현지법인을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관련서류 등을 보관하면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.

계정과목

Q 신문사주최 컨퍼런스 개최 협찬요청이 왔습니다. 사실상 업무 관련성은 없는데 기부금인지, 광고선전비인지요? 세금계산서는 발행받았습니다.

A 광고홍보 목적의 협찬이라면 광고선전비로, 광고홍보목적이 아니라면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데 해당 협찬의 목적은 광고선전비 특성이 강하지만 회사에서 정밀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.

교직원 진료비 감면 과세 관련

Q 부부가 모두 교직원인 경우, 교직원의 가족으로서 자녀가 받은 진료비 감면이나 학비 감면을 과세할 때 부부가 금액을 나눠서 과세해도 괜찮은가요?

진료비 감면액 중 일부는 부, 일부는 모에게 과세하는게 가능하다면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와는 연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.

부에게 자녀의 인적공제를 넣을 경우, 부/모에게 해당 자녀의 진료비 감면액을 나눠서 과세해도 되는지, 부에게 몰아서 다 과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.

A 원내 직원의 감면 관련하여 부부 모두가 직원인 경우 자녀의 학비나 진료비 감면액을 부/모 어느 한쪽에서 반영해야 하는지, 나누어야 하는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며, 귀원의 내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.